

동 지침은 정부·지자체 주최 행사 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며, 행사  
기간 및 성격, 참가자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관련  
**정부 · 지자체 행사 운영지침**  
**(제2판)**

2020. 2



**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**  
**(범정부대책지원본부)**

# 목 차

I. 목적 및 기본방향 .....	1
1. 목적	
2. 기본방향	
II.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.....	1
1. 적용대상	
2. 적용시기	
III. 불가피한 행사 개최 시 조치사항 .....	2
1. 공통 조치사항	
2. 행사별 추가 방역조치	
IV. 기타 사항 .....	3
1. 기 시행된 지침과의 관계	
2. 전문적인 방역대책에 대한 자문	

※ 본 지침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 6판(질병관리본부, '20.2.20)」 및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2판 개정안(중수본, '20.2.26)」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해당 지침 변경 시 본 지침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

## I 목적 및 기본방향

### 1. 목적

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 기간 중 **코로나19 확산** 방지를 위해 필요한 **예방 및 관리요령**을 권고하기 위해 마련
- 감염병 위기 경보 상향(경계⇒심각, 2.23)에 따라 기 시행 중인 「정부·지자체 행사 운영지침(212)」을 수정·보완,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

### 2. 기본방향

- 정부·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 중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**불요불급한 일회성·이벤트성**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
- 코로나19의 감염전파 가능성이 큰 **행사\***는 연기 또는 취소
  - \*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, 야외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비말 전파가 가능한 행위(노래·응원·구호 등)를 하는 행사
- **다수의 취약계층\***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
  - \* 영유아, 노인, 임산부, 만성질환자(당뇨병·심부전·만성 호흡기 질환·만성신부전·암환자 등), 장애인 등
-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「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2판 개정안(중수본, 2.26)」 및 본 지침 등에 따른 **방역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** 실시

## II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

### 1. 적용대상 :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집단행사\*

\* 행사·축제·공연·교육·훈련·시험 등 명칭 불문

### 2. 적용시기 : 지침 시행 시부터 코로나19 관련 상황 안정시까지

- 코로나19 방역 상황 변화에 따라 **별도의 지침을 시행할 때까지** 동 지침은 유효

### Ⅲ

## 불가피한 행사 개최 시 조치사항

### 1. 공통 조치사항

#### □ 행사 준비 시

- 행사 참가자 대상 사전 안내 또는 공지

##### < 사전 안내문 또는 공지사항 >

- ▶ 최근 14일 이내 여행력이 있거나, 발열 또는 기침,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
- ▶ 불가피하게 참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 등

※ 불가피한 참여자에 대하여 분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접촉 최소화 방안 강구

- 행사 장소의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예방조치 시행

- 시설 내 주요 공간(화장실, 손잡이 등)의 청소와 소독 실시

\* 특히,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취약계층 사용 공간 청결 강화

- 행사장에 비누·손소독제, 마스크(희망자에 지급) 등 충분히 확보·비치

- 호흡기 전파(비말감염)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환경 배제

- 행사 준비 시부터 종료 시까지 방역관리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'방역담당관' 지정·운영

- 의심환자 발생 시 대기를 위한 격리공간(마스크 착용자만 출입) 확보

##### <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심환자 >

- ①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자
- ②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다녀온 후,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나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이 나타난 자

-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행사요원 보건교육 실시

\* 최근 14일 이내 유행국가·지역 방문자 및 유증상자는 진행요원으로 참여 불가

- 행사장 내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\* 부착

\* 손씻기,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등

- 주최기관 -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핫라인 등 협조체계 구축

\* 관내 보건소, 인근 선별진료소, 콜센터(☎지역번호+120 또는 ☎1339)

## □ 행사 기간 중

- 실내행사 참여자 대상 발열체크 후 고열(37.5℃ ↑), 기침 등 의심환자 발생 인지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및 격리 공간 대기
  - \* 보건소 조치 전까지 의심환자 및 접촉하는 담당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
- 의심환자 발생시 선별진료소로 신속 이송 지원(이송 후 격리공간은 소독 및 임시폐쇄)
- 행사 참가자에게 지속적인 주의 메시지 전파(가급적 마스크 착용 등)
- 행사 참여자 및 관계자 대상 감염예방교육 및 홍보
  - 감염 예방수칙 및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교육
  - 행사장 주변(숙박업소, 식당, 관광지 등) 질병정보 및 예방수칙 홍보
- 필요 시 의심환자 발생 대비 행사장 인근 임시 진료소 운영

## 2. 행사별 추가 방역조치

- 행사의 성격, 참여 인원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상기 공통 조치 사항 외에 별도의 강화된 추가 방역조치 수립·시행

## IV 기타 사항

### 1. 기 시행된 지침과의 관계

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와 관련하여 기 시행된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 등 다른 지침에 대해 본 지침을 우선 적용
- 다만,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「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2판 개정안(중수본, 2.26)」 등 감염증 예방지침 적용

### 2. 전문적인 방역대책에 대한 자문

- 행사 주최기관에서 방역대책 수립·시행에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,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문의